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영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”이란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라 설립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광고의 주체) (생 략)	제16조(광고의 주체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 설>	② 영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기관”이란 「온라인투자연 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 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라 설립 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말한다.